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7. 18. 최기상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19.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 9.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 2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2. 26.)

상정·소위원회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최기상의원)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등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실무상 즉시항고가 있을 시 상급법원으로 재판기록이 송부되어 항고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재판절차가 실질적으로 정지되는데, 열람·등사의 반복된 신청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각각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법원 업무 및 절차의 과다로 재판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